

◦ 의견

개정(안)	수정(안)	사 유
[별표1]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가. 참여기술인 - ‘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’(국토부 고시)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%를 적용할 수 있음.(단,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~100%를 인정한다.) 또한,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(단,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%를 적용할 수 있음)	[별표1]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가. 참여기술인 - ‘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’(국토부 고시)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%를 적용할 수 있음.(단,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~100%를 인정한다.) 또한,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(단,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%를 적용할 수 있음)	◦ 최근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, ◦ 설계분야에서 전문분야가 아닌 타분야까지 확대하여 적용 및 투입하는 것은 설계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노력과 상충되는 일이라 판단됨 ◦ 또한, 특정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통해 지식 및 know-how를 습득한 전문인력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임
나. 용역수행실적 (3) 전차용역 수행실적 -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[용역의 종류,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, 단독·공동·하도급여부,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(면적, 길이, 금액 등)]에 따라 평가 -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-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,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	나. 용역수행실적 (3) 전차용역 수행실적 -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[용역의 종류,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, 단독·공동·하도급여부,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(면적, 길이, 금액 등)]에 따라 평가 -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-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,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	◦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평가하는 것은 전단계 용역수행에서 축적된 기술이나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입찰의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 ◦ 일반적으로 전차로 반영되는 기본계획의 경우 지자체의 전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록하고 있음 ◦ 개발계획의 종류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보다 많은 기술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, 수행실적 비율로 반영될 경우 전차 반영 비율이 적어짐에 따라 용역수행의 노력에 비해 과소하게 평가되어 전차반영의 취지에 어긋남